

의안번호	2206624
의 퇴 인	김형동의원
회 답 일	2024. 12. 3.
추계번호	24C4999

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한지문화산업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, 5,000만원, 2029년 6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1,000만원(연평균 4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한지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90	-	-	-	-	90	18
실태조사(안 제6조)	60	-	-	60	-	120	24
합 계	150	-	-	60	-	210	4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한지문화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 시행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실태조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7조(창업 및 제작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한지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한지 및 한지제품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8조(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한지 원재료 생산 및 수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9조(한지의 연구개발 촉진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, 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능력 등을 갖춘 한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고(제2항)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6	안 제10조(전문인력의 양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소 또는 대학 등을 한지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“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(제2항),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1조(한지전시관 등의 설치·운영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2조(우수사례의 발굴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의 생활화·산업화·세계화 등을 통하여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3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·연구, 한지문화산업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4조(한지문화산업 관련 교육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, 문화강좌 등에 한지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15조(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○	
2	안 제6조(실태조사)	○	
3	안 제7조(창업 및 제작 지원)	×	실시 중
4	안 제8조(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)	×	비용추계 곤란
5	안 제9조(한지의 연구개발 촉진 등)	×	실시 중
6	안 제10조(전문인력의 양성)	×	실시 중
7	안 제11조(한지전시관 등의 설치·운영 지원)	×	비용추계 곤란
8	안 제12조(우수사례의 발굴 등)	×	비용추계 곤란
9	안 제13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	×	실시 중
10	안 제14조(한지문화산업 관련 교육 지원)	×	실시 중
11	안 제15조(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)	×	비용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7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따른 사업은 이미 실시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참고로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연번	제정안	현행 사업	비고
1	창업 및 제작 지원(안 제7조)	-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(3,570백만원) - 전통문화 창업 도약기업 지원(960백만원)	
2	전통한지의 연구개발 촉진 등(안 제9조)	- 한류 문화예술인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한지 분야 지원(350백만원)	
3	전문인력의 양성(안 제10조)	-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(390백만원)	
4	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(안 제13조)	- 한복, 한식, 한지 등 전통문화 종합 해외거점 및 프로모션 '전통문화 해외진출지원'(1,000백만원) - 한지국제교류 및 한지판매 , 한지문화체험 등 '한지가현(구.한지문화산업센터) 운영'(900백만원) - 한지 관련 홍보 및 유통 활성화 등(350백만원)	
5	전통한지문화산업 관련 교육 지원(안 제14조)	-한지국제교류 및 한지판매, 한지문화체험 등 '한지가현(구.한지문화산업센터) 운영'(900백만원)	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 재정소요 발생 예상
-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문화체육관광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3] 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한지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90	-	-	-	-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실태조사(안 제6조)

-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억 2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에 한지 제조·유통 업체 및 시장 현황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5,600만원을 편성한 바 있고, 이를 감안하여 1회 실시조사에 따른 비용을 6,000만원으로 추정함
 -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, 본 추계에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해(2026년)와 3년 후인 2029년에 두 차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실태조사(안 제6조)	60			60		1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(안 제8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 원재료 생산 및 수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수

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라. 한지전시관 등의 설치·운영 지원(안 제11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의 지정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마. 우수사례의 발굴 등(안 제12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으나, 이는 향후 편성될 사업 예산편성 규모와 연동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
바.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(안 제15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원될 민간단체의 지정 기준 및 지원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